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8년 4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8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요건과 기업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개선·보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과 당면한 경제난의 조속한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

4. 주요골자

1.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취득하는 차량감면시 감면대상 차량의 확대

○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인 국가유공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

는 배기량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 ①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이륜자동차중 감면대상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

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차량소유 여부 판단사항 보완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 자동차관리 사업자에게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 폐차 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던 규정에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포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함.

2.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주거래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던 규정을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함)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매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함.

3. 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증전 :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제조업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른 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던 규정을

⇒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당해사업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다른 기업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양수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을 양수한 기업이 양수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차량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소유여부 판단 사항도 일부 보완하여 세제감면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과 기업간 사업양수 양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개선 및 보완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오나

본 개정 조례안의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난 극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